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안)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 목 적 :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중 가장 열악한 기관(기업)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
 - ①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휴게시설 신설·개선
 - 민간법인시설(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 민간 개인시설 및 임차시설은 지원 불가
 - ② 도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150억 이하인 중·소기업(제조업)

- ③ 도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 ④ 도내 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등 휴게시설 신설·개선
 - 경기도 소재 대학교

※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대학교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수는 없으며 가장 열악한 기관(기업)에 지원

○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

○ 지원금액 : 도비 20백만원 이내

- 단, 휴게시설의 신설, 지하에 있는 휴게실의 지상화 등의 경우 도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 재원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 (도비90%, 자부담10%)

○ 지원내용

-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샤워실 포함)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

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유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할 수 없음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2. 공모기간 : 2021. 3. 4.(목) ~ 2021. 3. 15.(월) 18:00까지

3.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기간 : 2021. 3. 17.(수) ~ 3. 26.(금) *사전 협의 예정
 - 신청기관 현황(정규직 비율, 수혜인원 등), 사업의 시급성(시설상태 등)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일시 : '21. 4. 6.(화)예정* (일정 추후 안내)
 -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 역량, 사후관리 적정성 및 구체성, 사전준비 상황 등
 - 신청 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여 사업계획 발표 (5분 내외)
 - ※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 개최 검토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 기관(기업)의 사업계획 발표는 없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 4.(목) ~ 2021. 3. 15.(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원본을 스캔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 전자파일은 이메일 제출 가능(kmy@gg.go.kr)
 - 우편신청의 경우 2021. 3. 15.(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10부 제출
 - ① 사업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⑤ 기타 증빙서류 (생활임금 서약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6. 결과발표 : 2021. 4월 말 /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4월 넷째주) 후 결과통보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031-8030-2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기관 (기업) 현 황	기관(기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해당분야	대학(), 사회복지시설 (), 산업단지 기업(), 요양병원()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직원현황	○ 전체 (명) -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청소·경비·간병인 현황 (해당기관만 작성)	<input type="checkbox"/> 청소노동자(명) <input type="checkbox"/> 경비노동자 (명) <input type="checkbox"/> 간병인 (명) <input type="checkbox"/> 직접고용(명) <input type="checkbox"/> 간접고용(명)					
	생활임금 서약제 (산업단지기업, 요양병원에 한해 작성)	<input type="checkbox"/> 생활임금 서약 이행 완료기업 <input type="checkbox"/> 생활임금 서약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신 청 현 황	후계실	구 분 (개선, 신설 등)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계	보조금	자부담
	(예시) 청소원 후계실	신설	본관 청소원 후계실 신설				
	간병인 후계실	개선	@@동 간병인 후계실 개선				
<p>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대표 ○ ○ ○ 인</p>							
<p>경 기 도 지 사 귀하</p> <p>※ 첨부서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결산보고서(재무제표) 1부. 3. 증빙서류 각 1부. </div> <div style="width: 45%;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노동인권 강좌개설 증빙서류 등 · 산업단지 기업 - 생활임금 서약서, 3년간 매출액 증빙서류 · 요양병원 - 생활임금서약서, 종사자수 증빙서류(4대보험 등) </div> </div>							

서식 2

「2021년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계획서

<시설1, 시설2 등> * 여러개 시설인 경우 시설별로 작성

□ 기본현황

기관(기업)명		사업명	
이용대상	청소원 (명)	위치 및 면적	지상 / 0000(면적 00㎡)
신청내용	신설(), 시설개선() / 지상화 여부 ()		
사업비	000,000천원(도비 000,000천원, 자부담 000,000천원)		
개선 필요성	0 - -		
사업계획	0 - - 0 - -		

□ 소요예산

구분	항목	소요자원구분			산출기초
		계	도비	자부담	
계					
00비	소계				
00비	소계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붙임 : 현장사진 / 견적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사기준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비 고
계	3개 분야 6개 항목	100		
정량기준 (10)				
신청기관 현황 (10)	▶ 정규직 비율 (정규직/전체)	5	· 정규직 비율 50%이상 : 5 · 40%이상 : 4 · 30%이상 : 3 · 20%이하 : 2	서류 심사
	▶ 수혜인원	5	· 10명 초과 : 5 · 4명 ~ 9명 : 3 · 3명 이하 : 1	
정성기준 (90)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의 구체성 (7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30	· 타당하며, 구체적 : 21 ~ 30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11 ~ 20 · 타당성, 구체성 미흡 : 1 ~ 10	
	▶ 사업추진 역량	2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우수 : 11 ~ 20 · 사업추진 기반은 갖추었으나 관리능력 미흡 : 5 ~ 1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미흡 : 1 ~ 4	
	▶ 사후관리의 적정 성 및 구체성	20	· 적정하며, 구체적 : 11 ~ 20 ·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 5 ~ 10 · 적정성, 구체성 미흡 : 1 ~ 4	
사업의 시급성 (20)	▶ 시설 상태	20	·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 11 ~ 20 · 시설 노후·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 6 ~ 10 · 기존시설 양호 : 비대상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

산업단지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사기준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비 고
계	3개 분야 8개 항목	100		
정량기준 (15)				
신청기관 현황 (15)	▶ 운영기간	4	· 10년 이상 : 4 · 5년 이상 : 3 · 5년 미만 : 1	서류 심사
	▶ 업체의 영세성 (고용인원 수)	4	· 50명 이하 : 4 · 150명 이하 : 2 · 100명 이하 : 3 · 200명 이하 : 1	
	▶ 정규직 비율 (정규직/전체)	4	· 정규직 비율 50%이상 : 4 · 30%이상 : 2 · 40%이상 : 3 · 20%이하 : 1	
	▶ 생활임금 서약 및 이행 기업	3	· 생활임금 서약 이행 완료기업 : 3 · 생활임금 서약 기업 : 2 · 생활임금 서약 미신청 기업 : 0	
정성기준 (85)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의 구체성 (65)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 성	25	· 타당하며, 구체적 : 16 ~ 25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11 ~ 15 · 타당성, 구체성 미흡 : 1 ~ 10	
	▶ 사업추진 역량	2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우수 : 11 ~ 20 · 사업추진 기반은 갖추었으나 관리능력 미흡 : 5 ~ 1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미흡 : 1 ~ 4	
	▶ 사후관리의 적 정성 및 구체성	20	· 적정하며, 구체적 : 11 ~ 20 ·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 5 ~ 10 · 적정성, 구체성 미흡 : 1 ~ 4	
사업의 시급성 (20)	▶ 시설 상태	20	·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 11 ~ 20 · 시설 노후·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 6 ~ 10 · 기존시설 양호 : 비대상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
 ※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고용인원), 생활임금 서약서

요양병원 청소·경비·간병인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사기준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비 고
계	3개 분야 9개 항목	100		
정량기준 (20)				
신청기관 현황 (20)	▶ 운영기간	3	· 10년 이상 : 3 · 5년 이상 : 2 · 5년 미만 : 1	서류 심사
	▶ 업체의 영세성 (고용인원 수)	4	· 50명 이하 : 4 · 150명 이하 : 2 · 100명 이하 : 3 · 200명 이하 : 1	
	▶ 정규직 비율 (정규직/전체)	4	· 정규직 비율 50%이상 : 4 · 30%이상 : 2 · 40%이상 : 3 · 20%이하 : 1	
	▶ 청소, 경비, 간 병인 등 직접고 용 비율	5	· 직접고용 비율 50%이상 : 5 · 30%이상 : 2 · 40%이상 : 3 · 20%이하 : 1	
	▶ 생활임금 서약 및 이행 기업	4	· 생활임금 서약 이행 완료기업 : 4 · 생활임금 서약 기업 : 3 · 생활임금 서약 미신청 기업 : 0	
정성기준 (80)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의 구체성 (65)	▶ 사업계획의 타 당성 및 구체성	25	· 타당하며, 구체적 : 16 ~ 25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11 ~ 15 · 타당성, 구체성 미흡 : 1 ~ 10	
	▶ 사업추진 역량	2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우수 : 11 ~ 20 · 사업추진 기반은 갖추었으나 관리능력 미흡 : 5 ~ 1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미흡 : 1 ~ 4	
	▶ 사후관리의 적 정성 및 구체성	20	· 적정하며, 구체적 : 11 ~ 20 ·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 5 ~ 10 · 적정성, 구체성 미흡 : 1 ~ 4	
사업의 시급성 (15)	▶ 시설 상태	20	·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 11 ~ 20 · 시설 노후·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 6 ~ 10 · 기존시설 양호 : 비대상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

※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고용인원), 생활임금 서약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사기준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비 고
계	4개 분야 8개 항목	100		
정량기준 (15)				
신청기관 현황 (10)	▶ 정규직 비율 (정규직/전체)	4	· 정규직 비율 50%이상 : 4 · 30%이상 : 2 · 40%이상 : 3 · 20%이하 : 1	서류 심사
	▶ 청소·경비노동자 직접고용 비율 (직고용/전체청 소·경비노동자)	4	· 직접고용 비율 50%이상 : 4 · 30%이상 : 2 · 40%이상 : 3 · 20%이하 : 1	
	▶ 수혜인원	2	· 10명 초과 : 3 · 9명 이하 : 2	
도정 참여율 (5)	▶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5	· 노동인권 강좌 개설 : 5 · 미개설 : 0	
정성기준 (85)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의 구체성 (65)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5	· 타당하며, 구체적 : 16 ~ 25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6 ~ 15 · 타당성, 구체성 미흡 : 1 ~ 5	
	▶ 사업추진 역량	2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우수 : 11 ~ 20 · 사업추진 기반은 갖추었으나 관리능력 미흡 : 5 ~ 1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미흡 : 1 ~ 4	
	▶ 사후관리의 적정 성 및 구체성	20	· 적정하며, 구체적 : 11 ~ 20 ·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 5 ~ 10 · 적정성, 구체성 미흡 : 1 ~ 4	
시설환경 (20)	▶ 시설 상태	20	·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 11 ~ 20 · 시설 노후·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 6 ~ 10 · 기존시설 양호 : 비대상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